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소형 및 첨단 디지털기기의 발달 및 보급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민의 사생활 보호, 시설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안 제8조)

바.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안 제9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첨단 디지털기기가 일반화 및 소형화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관련 범죄 및 검거 사례가 있었음¹⁾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의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의 발생, 검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국)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구속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	5,762	5,440	94.4%	5,556	5,278	278	190	4
2020	5,032	4,744	94.3%	5,151	4,848	303	201	4
2021	6,212	5,345	86.0%	5,792	5,484	308	227	3
2022	6,865	5,702	83.1%	6,532	6,247	285	251	8
2023	6,626	5,675	85.6%	6,042	5,574	355	321	4

* 출처 : 2023 경찰통계연보 제67호

(충북도)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구속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	118	118	100%	114	108	4	2	4
2020	85	83	97.6%	92	81	11	-	4
2021	116	112	96.6%	119	110	5	4	3
2022	116	122	105.2%	129	121	7	1	8
2023	135	141	104.4%	148	145	2	1	4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충북청, 2019 ~2023)

- 이에 충청북도민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의 사전예방 및 사후 점검 등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함

1) 충청일보, 옥천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검거, 2024.11.17.(<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665>), KBS뉴스,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 군중 목사 검찰 송치, 2024. 11. 25.(<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4206&ref=A>)

나.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 대책과 시설 점검 등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했고,²⁾ 2025년 4월 18일 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3곳이며, 충북 지역 3개 시군에서도 시행 중임³⁾
- 이 제정안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충북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⁴⁾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제정이 가능함
- 그 밖에 조례안예고(2025. 4. 14. ~ 21. / 제출된 의견 없음)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수용(일부 조문 수정)]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2) 2018년 6월,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다각적인 범죄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2021년 7월,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을 점검 시 카메라 등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 2023. 7. 21.)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시행 중에 있음

3)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행 현황(2025년 4월 18일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	○	○	○	○	×	○	○	○	○	○	×	○	○	×	○	○	×
기초	20	8	8	7	3	5	1	-	26	12	3	14	7	13	3	7	-
교육청	○	○	×	○	×	×	○	×	○	○	×	○	×	○	○	×	○

※ 충북 지역에서도 11개 시군 중 3개 시군(충주시, 옥천군, 괴산군)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함

4)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다. 주요 내용 검토

- 이 제정안은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체계는 아래와 같음

구분	제목	구분	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사업 등
제2조	정의	제7조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
제4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5조	실태조사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충청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의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등, 공중위생영업소,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기기 등에 관해 충청북도민과 집행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함
 - 특히, ‘이벤트나 장난 등 유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범죄의식 약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불법촬영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 해당 행위의 범죄성 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올바른 표현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함
-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불법촬영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음
-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 관해 규정하여,
 -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특히, 포함사항에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특별관리구역 지정,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구성·운영 및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

○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시행 중인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부서의 중복업무 배제 및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안 제6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반 운영 및 적정 탐지장비 확보지원, 민간 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에 대한 지원 등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동점검반 또는 상시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지원할 수 있고, 자체 점검 시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대여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화장실 등까지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는 불법촬영에 관한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 충청북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충북도 내 시군뿐만 아니라 경찰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기대됨
- **안 제9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등에 관한 사용교육과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라. 그 밖에 검토 사항

-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다중이용 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이므로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의사입법담당관-808)

마.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바람직함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내용 및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